

# Korean Tax Update

November 2017, Issue 41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1) 개정이유

-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4 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 4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 국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보도자료]

(추진경과)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국세청은 '17.8.9. 및 9.27. 2 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 명에 대해 581 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적발사례로는 ①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②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③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하여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임.

(추가조사) 국세청은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음.

-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 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향후추진계획) 강남재건축 단지(예정포함)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검증(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검증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31 건, 107 억원 추징), ②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 노력, ③ 고액 자산가 자금 출처 검증 예정임.

### 국세청,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 [보도자료]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는 2017. 11. 15.(수) 제 2 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였음.

- 개혁 T/F 는 지난 8.31 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 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 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총 5 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 의 4)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됨.

- 이에 따라, 개혁 T/F 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함.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함.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보도자료]

국세청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음.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 받게 됨.
-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함.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 2367호, 2017. 11. 27) [전문보기]

2016년 5월 17일 제 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워크네(Workneh Gebeyehu) 에티오피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11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함.

[예규·판례]

**[판례 1]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 두 40139 판결

- 리스회사인 원고가 각 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고 그 각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건에서, ①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 10416 호로 개정되면서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점, ③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은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 3 조 제 2 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각 지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함.

**[판례 2]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에 대해서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며, 외국 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려면 대리인의 권한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7. 11. 12. 선고 2014 두 3044, 2014 두 3051(병합) 판결

- ①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을 갖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 두 19229, 19236 판결 참조). ② 구 법인세법 제 94 조 제 3 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 9 조 제 4 항에서도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함.

**[판례 3]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 사용 부분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 두 47502 판결

- 이 사건 주차장은 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위 주차장의 이용차량 중 무료이용차량의 비율이 약 75%에 달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을 경영함에 있어 환자 등의 접근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이 없다면 의과대학 부속병원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 3 자에게 임대한 것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임.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은 일부 이용객으로부터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 111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 1. 법률 제 116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 136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 41 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 150 조 제 6 호의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임(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 구합 104519 판결).

**[심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 32 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조심 2017 구 3902, 2017. 11. 3.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회사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음.

**[심판례 2]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가능한 것임**

조심 2017 구 3074, 2017. 10. 30.

-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51 조를 잘못 해석한 것임. 또한 과세관청은 자료상행위와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해당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판례 3] 해운업계의 국제관행 및 선주사 요구에 따른 어드레스커미션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됨**

조심 2015 서 4051, 2017. 10. 27.

-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례 4]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조심 2017 서 3586, 2017. 10. 24.

-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 104 조 제 1 항 제 11 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예규 1]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 9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 11. 1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 제 93 조 제 4 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4 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2 조 제 1 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 9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예규 2]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수가 5 인에서 3 인으로 변경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할 수 없음.**

지방세특례-1497, 2017. 11. 2

- 추정은 일단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 두 516 판결 참조)이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수가 설립요건인 5 인에서 3 인으로 변경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 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수가 5 인에서 3 인으로 변경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예규 3]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2017.10.23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CI 및 BI 개발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예규 4]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5 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부가-506, 2017. 10.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의 9 에 따른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법인)가 지점사업장의 스크랩등 거래에 대해서도 주된 사업장인 본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5 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같은 조 제 6 항 규정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스크랩 등의 가액 결제에 따른 가산세 징수대상 및 같은 조 제 7 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또는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인사] 백운찬 前 관세청장(前 조세심판원장 및 세제실장) 및 이학영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영입**



**백운찬 고문**

2014 관세청장  
2013 조세심판원 원장  
2011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학영 고문**

2014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2013 국세청 자산과세국 국장  
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 국 국장



**[경정]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 총당 법인세 환급**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익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및 연구개발출연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기한 경과된 미사용 이월결손금 보전에 총당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230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Tax 본부 김성현 상무(02-2112-0958), 손한석 Manager(02-2112-0967)

**[경정] 광고선전목적 혹은 판매촉진용으로 무상출고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광고선전목적 혹은 판매촉진용(예 : 1+1, 행사용품)으로 무상출고된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36 억원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

- Global Tax 본부 김동훈 상무(02-2112-0938), 윤상혁 S.Manager(02-2112-3434)

**[기고] 한국경제 머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오해 [기사보기]**

Domestic Tax 2 본부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팀  
정병수 상무(02-2112-7506), 이승윤 Manager(02-2112-6842)

**[기고] BUSINESS Watch 텍스리포트, 미성년자에게 물려준 땅 증여세는 진행형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